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07호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2020. 11. 2.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수입 축산물의 검사 수수료 부과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부합토록 개선하고, 수입 신고 기준과 검사 대상 기준을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별로 통일하며,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의 검사항목, 방법 등을 고시에 명문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 축산물 검사 수수료 부과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부합토록 개선(제6조제6항 및 부칙)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수입식품등의 검사 수수료 면제 대상 이외에는 검사 수수료를 부과

나. 수입 신고 기준과 검사 대상 기준을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부합토록 개선(제2조, 제7조, 제8조 제2항 및 제9조제1항)

- 1) 수입 신고 및 검사 대상 기준을 동일 B/L의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별”로 통일

- 2) “제품명”의 정의를 신설하고, 식육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동물용의약품, 농약 또는 오염물질 등 잔류허용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검사

다.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의 검사항목, 방법 등을 고시에 명문화(제8조제3항 및 제4항)

- 1)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시 식약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 항목 적용
- 2) 기준 또는 규격의 신설 또는 강화 시 검사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정밀검사 항목 등 개선

라. 해외 반송품 및 부적합 축산물의 정밀검사를 개선(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5항)

마. 검사시료 송부 위탁관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운반 영업자로 개선(제9조제3항)

바. 최초 정밀검사 항목에 관한 정보, 최초 또는 기준·규격의 신설·강화 검사 시 식육의 검사 중 정보(생산국, 품목, 해외작업장) 공개(제20조제3항)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제2020-2910호(2020.6.29.)

2) 행정예고 : 공고 제2020-287호(2020.7.7.)

3) WTO 통보 : KOR690(2020.7.15.~2020.9.1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0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부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부터 제34조에 따른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7호, 2020. 3.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식육의 “품목”이라 함은 쇠고기, 쇠고기부산물, 돼지고기, 돼지고기부산물, 닭고기, 닭고기부산물, 칠면조식육, 오리식육, 양식육, 염소식육, 토끼식육, 사슴식육, 말식육, 기타식육 등을 말한다.

4. “제품명”이라 함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는 수입 축산물의 명칭을 말한다. 다만, 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제6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수입신고인이 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를 “수입 신고인은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라 검사수수료의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검사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시험·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청장은 이를”로 한다.

4. 별지 1호 서식의 수입 축산물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

제7조 중 “식육은 품명별(가공품은 제품명, 해외작업장)”을 “제2조제2호의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별”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를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수입 축산물의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의 적용과 그 검사결과는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 단위로 한다. 이 경우 수입 축산물 중 식육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동물용의약품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또는 오염물질 등의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 항목을 적용한다. 다만, 중점검사 항목 이외의 동물용의약품, 농약 또는 오염물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다목2) 및 제4호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거나 강화 시 정밀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수입 축산물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부터 제5.에 따른 축산물의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
2. 수입 축산물 중 식육·원유·식용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인 동물용의약품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또는 오염물질 등의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로써 검사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항목에 검사 적용

제9조의 제목 “(정밀검사 검체 채취 등)”을 “(검사용 검체 채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밀검사”를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로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시료의 채취 및 취급 방법에 따른다. 다만, 우지, 돈지 등 벌크상태의 축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를 삭제

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에 따라 축산물운반업 영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되 해당 부적합 검사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5항 본문 중 “미생물, 첨가물,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 부적합”을 “부적합”으로, “정밀검사를”을 “연속으로 정밀검사를”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 항목은 최초 정밀검사 항목을 적용하되 해당 부적합 검사항목을 포함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호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의 최초 정밀검사 항목에 관한 정보
2.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 축산물 중 식육의 정밀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 생산국·품목·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에 관한 정보. 이 경우 공개기간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검사정보의 공개 개시 시점까지로 한다.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 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입위생요건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를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신고 및 검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수입신고 및 검사 등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비고 4.를 삭제한다.

권(B/L NO)단위로 하되, 식육은 품명별(가공품은 제품명, 해외작업장)로 하여야 한다.

제8조(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① (생 략)

② 수입 축산물 중 식육의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의 적용은 품목단위로 한다. 이 때 품목이라 함은 쇠고기, 쇠고기부산물, 돼지고기, 돼지고기부산물, 닭고기, 닭고기부산물, 칠면조식육, 오리식육, 양식육, 염소식육, 토끼식육, 사슴식육, 말식육, 기타식육 등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2조 제2호의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별-----.

제8조(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수입 축산물의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의 적용과 그 검사 결과는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 단위로 한다. 이 경우 수입 축산물 중 식육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동물용의약품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또는 오염물질 등의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 항목을 적용한다. 다만, 중점검사 항목 이외의 동물용의약품, 농약 또는 오염물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다목

2) 및 제4호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거나 강화 시 정밀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수입 축산물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부터 제5.에 따른 축산물의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

2. 수입 축산물 중 식육·원유·식용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인 동물용의약품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또는 오염물질 등의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로써 검사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항목에 검사 적용

제9조(정밀검사 검체 채취 등) ① 제3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축산물이 정밀검사에 해당되는 경우 검체의 채취는 시행규칙 별표 1 2 수입식품 등의 무상수거 대상 및 수거량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제9조(검사용 검체 채취 등) ① -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
검사-----

----- 「식품의

정하고 있는 검사시료의 채취 및 취급 방법에 따른다. 다만, 우지, 돈지 등 벌크상태의 축산물
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검체의 채취는 선상에서 하거나 저장고에 투입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동일 모선에 선적된 축산물로서 품명이 같은 것이 여러 구역에 분산되어 선적된 경우에는 각각의 중량 비율에 따라 채취하여 혼합한 것을 검체로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검체의 송부는 검체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계 공무원등이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4호 「시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거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를 통해 송부할 수 있다.

④ (생략)

기준 및 규격」 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른다.

<삭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에 따라 축산물운반업 영업의 신고를 한 자-----
-----.

④ (현행과 같음)

각호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의 최초 정밀검사 항목에 관한 정보

2.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 축산물 중 식육의 정밀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 생산국·품목·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에 관한 정보. 이 경우 공개기간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검사정보의 공개 개시 시점까지로 한다.